##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7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 · 오영환 · 이수진

이용우 • 이워택 • 임호선

정청래 · 최혜영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9조, 제45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##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39조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3호 중 "어분(魚粉)"을 "생선가루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	제39조(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
에 대한 지원) 댐건설사업시행	에 대한 지원)
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	
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	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	
생활기반 상실 등을 <u>감안</u> 하여	<u>고려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지원을 할 수 있다.	
제45조(환경부장관 등의 권한) ①	제45조(환경부장관 등의 권한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하천법」 제46조제6호에	3
따른 야영, 취사와 떡밥· <u>어</u>	<u>생</u>
<u>분(魚粉)</u> 등 미끼를 사용하여	선가루
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	
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	
4. ~ 5. (생 략)	4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